

영등포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신홍식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87호로 2013년 2월 21일 신홍식의원 외 4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에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 나. 협의회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여 건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함(안 제3조)
- 다.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협의회 간사를 “건강증진과장”에서 “보건지원과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에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였고,
-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에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시하였고,
- 안 제7조에 협의회 간사를 현행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관련 법령에 맞게 소관부서장으로 변경하였고,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민 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협의회로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 참 고 자 료

## 1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보고·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